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7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안태준 · 이춘석 · 복기왕
이광희 · 염태영 · 소병훈
김동아 · 이병진 · 문진석
이언주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①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지원
2. 안전점검 결과 분석 지원
3.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예측 및 현황조사
4. 지하안전관리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안전점검 장비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
6.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촉진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8. 그 밖에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7조의2(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①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하안전관리 지원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지원</u> <u>2. 안전점검 결과 분석 지원</u> <u>3.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예측 및 현황조사</u> <u>4. 지하안전관리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u> <u>5. 안전점검 장비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u> <u>6.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촉진</u> <u>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u>

	<u>기술의 도입</u> <u>8. 그 밖에 지반침하로 인한 위</u> <u>해 방지 업무 수행을 지원하</u> <u>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u> <u>③ 그 밖에 전담기구의 조직</u> <u>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	--